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요령 안내

♡경상남도 (감사관실)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실수 시례〉

- ◆ 신고기준일('13.12.31)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함
- ◆ 친족의 고지거부 허가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지거부 허가 없이 친족의 재산을 누락함
- ◆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나, 본인 등 공동명의의 '문중재산', 본인 명의의 친목(동창)회비 등 예금계좌를 누락함
- ◆ 전세권을 건물 항목에 신고하여야 하나, 누락하거나 채권항목에 잘못 신고함
- ◈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여야 하나, 누락함
- ◆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예금·보험 등을 해약한 경우 '해약'에 체크(✔)를 하여야 하나, 현 가액만 '0'으로 처리함
-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는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여 누락함
-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신고 하여야 하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누락함
- ◈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예금을 누락함
- ◈ 아파트 등 건물의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해당 지분 만큼 신고해야 하나, 합산하여 남편(또는 아내)의 소유로 신고하는 경우
 - ※ 아파트는 건물가액만 신고(대지 제외), 상가·빌딩·오피스텔은 대지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목 차

I 정기재산변동신고	1
 Ⅲ 재산항목별 신고 시 유의사항 □ 신상명세서, 친족사항 □ 총괄표, 부동산(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등 □ 현금 □ 예금 □ 주식 등 증권 □ 채권, 채무 □ 급(백금), 보석류·골동품·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5 6 8 8 9 10 11 12 13 13
□ 변동요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13 14 15 16 19
 Ⅳ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작성요령 □ 공개개요, 공개목록작성시 유의사항 ····································	21 22 25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 2.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 3.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	27 30 60

I 정기재산변동신고

□ 정기변동신고 개요

○ 신고대상 : 기존 및 신규등록 의무자

- 도지사, 국제관계대사, 부산진해구역청장, 의회의원(기초, 광역), 도립대학총장, 4급 (상당)이상 및 등록부서 7급(상당)이상,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방장 이상, 공직유 관단체 임직원
- ※ 공직유관(12): 마산의료원, 개발공사, 신용보증재단, 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람사르환경재단, 로봇산업 진흥재단, 청소년종합지원본부, 문화예술진흥원,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 ※ 등록부서(12): 감사관실, 세정과,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식품의약과,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계 제외, 지소포함)

○ 신고예외

- 2013년 12월중(12. 1~12.31)에 최초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최초재산등록만 하고 2014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는 생략
- 2013.12.31일자 및 2014. 1~2월중에 퇴직한 자는 퇴직자 변동신고, 의무면제 된 자는 의무면제 신고만 하고, 정기재산변동신고는 생략

○ 신고기준일 : 2013. 12. 31

-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13.12.31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 재산변동사항 외에도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 인적사항 현행화, 부동산의 면적, 지번 등 오기 수정, 변동요약서상 연간소득액(단위 천원), 증감사유 등도 필히 '13.12.31일자 기준으로 기재

○ 신고기간: 2014. 1. 1 ~ 2. 28. 24:00까지(2개월)

- 신고기간 종료시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mark>우리도는</mark> 2014. 2. 14(금)일 까지 신고하여 원활한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람.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

- ◈ PETI사이트 주소: http://www.peti.go.kr
- ◈ 공직윤리종합시스템 재산등록의무자 매뉴얼
 - http://www.peti.go.kr ⇒ 게시판 ⇒ 자료실
 - 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실과홈페이지(감사관)⇒ 공직자재산등록
 - 시도행정 포털시스템 하단 ⇒ 재산등록

□ 사전준비 사항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전자사명 또는 공인 인증서』 준비
- O 사용하는 인증서가 없을 경우 발급방법
 - 행정전자서명 ⇒ 공무원인 경우에만 발급되며 전산부서에 문의 하여 발급
 -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정보통계담당관실), 소방서(소방본부 119상황실 소방정보통신담당)
 - 공인인증서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급가능

□ 금융·부동산 자료 사전제공

- 정기재산변동신고시 등록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 의무자에게만 제공
 - <u>제공되는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므로</u>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종전 신고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신고

〈 금융 및 부동산 조회내역 열람 서비스 〉

- ◈ PETI시스템의 총괄표 상에 있는 부동산/금융자산 조회내역기능을 활용파악
- ◈ 시전 조호된 부동산 및 금융자료는 조기신고 일정을 감안 2014.1.15(수)부터 시스템으로 일괄제공 예정

금융(잔액) 정보

- →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13.12.31.기준으로 소유자별, 계좌별 등으로 예금, 채무, 증권, 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시스템을 통해 등록의무자에게 제공
 - ※ 금융(예금·보험·유가증권·금융기관 채무) 정보는 15일부터 17일까지 자료 정확성 검증 실시[1, 21(화)부터 등록의무자 활용(입력)가능]
 - ※ 미회신, 회신오류 등이 있을 경우 해당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재회신 요청

부동산 정보

- ◈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자에 한해 1월 15일부터 의무자별로 제공되며,
- ◈ 총괄표의 ♥♥₹₭₭₭₭₭ 글리하여 부동산 정보제공자료를 확인 후, 1월 21일부터 입력 가능
 - ⇒ 토지 :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자료로 시·군·구 지적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자료
 - ⇒ 건물 : 안전행정부의 재산세 과세자료로 시·군·구 재산세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자료
 - ※ <u>건물정보는 '13. 6월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이므로 6개월간('13. 7월~12월)의 변동사항은</u> 반영되지 아니함

등록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등록의무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금융 및 부동산관리 관계 기관을 통하여 재산정보를 확인한 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함

☆☆☆ 신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 고지거부허가 신청<상세 지침 14페이지 참조>

-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시 고지거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스캔 입력후 기한내에 원안을 감사관실로 제출
 - ※ 기존에 고지거부 허가자는 제외(PETI시스템에서 개인별로 확인가능)

구 분	신규 신청자	재심사 신청자
신청 대상	○ 최초신청자 ○ '13년 재심사 미신청자 ○ '13년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	○ '11.12.31기준일 정기 재산변동신고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대상자 ○ '11년 최초(재등록)등록의무자가 되어 고지거부를 받은 대상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에 재심사 신청)
신청 기간	○ '14. 1. 1~1. 30까지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14. 1. 1~2. 28까지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내)

※ '13년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 소유재산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공식적 가격)으로 신고

- 기존 등록재산은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가액 등이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된 평가가액을 신고
 - ※ '13년도 중 신규로 취득 또는 매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취득 (매도)일, 자금원, 취득(매도)경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기재

□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고지거부 허기기간(3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사실상 소유 및 명의상 재산의 신고

- 공부상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신고 ※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속·증여 재산, 무허가 주택 등
-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신고 ※ 종중재산, 동창회비(친목회비) 예금계좌 등

□ 전세권은 건물 항목에 임대보증금은 채무항목에 신고

- 전세권과 분양권은 채권의 성격이 있으나 건물항목에 신고해야 함
- 임대보증금은 채무항목에 신고하여 소유건물 관리형태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지 않도록 유의

□ 공동명의 건물 신고시 유의

-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해당 지분만큼 신고해야 하나, 합산하여 남편(또는 아내)의 소유로 신고 하는 경우 자주 발생
 - ※ 아파트는 건물가액만 신고(대지 제외), 상가빌딩·오피스텔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는 소유권 취득 또는 소유권 상실에 체크 신고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는 모두 신고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여 자주 누락

□ 보험상품 및 급여에서 자동이체 되는 예금통장 신고에 유의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신고 하여야 하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자주 누락
-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예금 및 마이너스 통장(금융채무) 자주 누락
 - ※ 예금·보험 등을 해약한 경우 '해약'에 체크(✔)를 하여야 함(현 가액만 '0'으로 처리한 경우 자주 발생)

□ 재산변동사항 및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재

- 신규재산의 경우 취득일, 취득경위, 자금원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예금, 채무등 기존 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기재
- 본인 및 본인 외 소득을 변동요약서에 기재하고, 소득대비 재산증감폭이 큰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

□ 제출신고서 수정방법

- 신고서 제출기간(정기변동 1~2월)내에 수정방법
 - 신고서를 제출한 후 언제든지 다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시 작성할 수 있음
 - ▶ 신고서 제출기간내(2월 28일 이내)에는 "신고서수정요청 및 승인" 절차 생략
- 신고서 제출기간 만료 후 수정방법
 - 신고서 제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3월10일)에는 신고서 수정가능
 - ▶ 신고서 제출기간 만료 후에는 "신고서수정요청 및 승인" 절차 필요

※ 의문사항 문의

- 도 감사관실(☎211-2296 문부곤)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 ☎02-2100-3333

Ⅲ 재산항목별 신고시 유의사항

□ 신상명세서

- 신상명세서의 소속 및 직위, 직급과 자택주소, 직장주소, 전화번호 등을 신고기준일(2013.12.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 자택 및 직장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 전입·전출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을 변경
 - 거주지가 관사, 친척집 등인 경우 자택주소의 건물명 란에 해당사항 기재(예: ○○아파트(관사) 등)

□ 친족사항

- 출생·사망·결혼(출가)·이혼 등의 사유로 친족의 신분상 변동과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을 신고기준일('13.12.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 친족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변동사유' 란에 그 권리의 종류 및 거주형태를 반드시 기재(에 : 판사, 기숙사, 친척집, 사글세 등)

※ 등록대상 친족

-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은 반드시 필수 등록대상 임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 ⇒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 양부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재산등록대상이 아님
- ♠ 여성의무자의 신고대상 직계존속
- 법 개정 이전('09. 2. 3) 혼인하고 재산등록을 했던 여성의무자 : 시부모
- 법 개정 이후('09. 2. 3) 기혼 또는 미혼인 여성의무자 : 친부모

○ 고지거부

-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 고지거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부양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하여야 함.

○ 등록제외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이나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체크(√)
- 이혼한 딸의 등록제외의 체크(√) 해제
- 부모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 <부(시부)□, 모(시모)□>에 체크(√)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 <미혼□, 이혼□, 사별□>에 체크(√)

□ 도로명주소 검색 일부 제한시 조치방법

○ 일부시설에 대한 도로명 주소 검색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이런 경우 주소 입력시 [기타] 선택 후 직접 입력

구 분	입 력 방 법
일반 주소	[국내] 선택 후 [도로명주소] 찾기로 검색 후 선택
국외 주소	[국외] 선택 후 주소만 직접 입력
검색되지 않을 경우	[기타] 선택 후 우편번호와 주소를 직접 입력

□총괄표

- 소재지·면적 등 권리 명세란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상의 재산종류별 기재요령을 참조·작성
- 예금 및 유가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하되 개인별·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기액반영 및 증감시항 신고

- o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을 신고
-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지식재산권 등은 가액 미반영
- o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가액 등이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사항을 신고
- o 2013년도 중 신규로 취득한 재산은 각 재산의 취득일, 자금원, 취득경위 등을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 o 연도 중 매도한 재산은 그 매도일, 매도가격 등을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 부 등 산(토지, 건물) ※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지 않고 지번주소 그대로 입력

- ◈ 토지, 건물의 권리명세(소재지의 지번과 상세주소, 지목, 종류 및 용도) 정정방법
- ⇒ 종전에 잘못 신고한 권리명세는 변동화면에서 "권리명세변경"에 체크하여 수정

< 부동산(토지,건물) 조회내역 열람 서비스 >

- ◈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자에 한해 1월 15일부터 의무자별로 제공되며,
- ◈ 총괄표의 ♥♥₹₭₭₭₭₭ 글리하여 부동산 정보제공자료를 확인 후, 1월 21일부터 입력 가능
- ◈ 부동산 제공정보의 관계기관
 - ⇒ 토지 :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자료로 시·군·구 지적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자료
 - ⇒ 건물 : 안전행정부의 재산세 과세자료로 시·군·구 재산세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자료
 - ※ 건물정보는 '13. 6월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이므로 6개월간('13. 7월~12월)의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아니함

제공되는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등록의무자는 부동산정보 중 자신의 책임하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관리 관계 기관을 통하여 반드시 재산정보를 확인한 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함

- 종전신고 후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할·합병·증축· 개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분양권 중도금이 증가된 경우,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등 변동사항을 신고
 - ※ 전세권(임차권) 및 분양권은 건물항목에 신고(누락 주의)
 - ※ 다만, 종전 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경우 현 가액 유지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고,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 알리미에 게재된 지자체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 공동소유 부동산은 '면적' 과 '現 기액' 란에 소유 지분을 신고(예: ○○m' 중 ○○m')
-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의 관리형태를 '변동사유'란에 기재
-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
 - ※ 아파트의 경우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권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 **상가·빌딩·오피스텔**의 경우 소유 지분만큼의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고시금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된 경우 제외)
-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경우
 - 매도 또는 매입이 완료된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
 - 매도시 신고기준일 현재 단순히 계약금만 받았으면 가액변동만 신고하면 되나 중 도금까지 받은 경우는 실거래가 및 실제 받은 금액을 신고함. 이 경우 받은 총 금액을 가액란에 기재하고 매매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매도절차가 진행 중임을 변동사 유란에 간략히 기재
 - 매입시도 계약금만 준 경우는 신규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는 총 지급금액을 가액으로, 매매가를 실거래가로 신고
-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매도하였을 경우에는 매도한 지분만 감소 기재하고 일부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변동사유란에 간략히 기재
- 신규 전세권을 설정하고 종전 신고된 전세권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신규 전세권을 신고함과 아울러 해지된 전세권은 감소 신고
-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자금출처, 사용처, 사유 등을 변동사유란에 소명

부동산 가액의 산정 방법

- o 토지는 해당 시·도 홈페이지나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시·군·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기재
- o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기재
- o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여 기재
- o 미입주 분양아파트는 가액란에 실제 납입금액을 기재(실거래액란에 총 분양액을 기재)
- o 기타 상가 · 빌딩 · 오피스텔 등은 건물은 대지가액(공시지가×면적)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을 합산하여 기재

- 전세(임차)권 누락 주의
 - 본인 및 친족의 주소지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경우는 전세(월세)보증금을 건물항목에 『전세(임차)권』으로 신고하여야 함
- 건물(토지)임대채무 누락 주의
 - 건물 신고시 본인 및 친족 소유로 신고한 경우 해당건물에 대하여 임대를 준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 항목에 『건물임대채무(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로 신고
- 건물(토지) 분양권 누락 주의
 - 건물·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아직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기준일 현재 총 납부액을 신고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어업권은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 신고
- 자동차는 매매 등 거래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보유 시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80조) 등의 순으로 가액 변동신고
 -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를 신고하고 할부 잔액은 채무란에 신고
 - ※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권리명세 변경
- 기 등록된 자동차를『폐차』、『매도』또는『증여』한 경우는 **감소**신고
- 매매로 인한 변동시에는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변동사유란에 소명

〈 리스자동차의 신고방법〉

- ◆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리스로 인한 『채권, 채무』는 신고하여야 함
 - ▶ <u>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란에 신고</u> ▶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신규 추가 시 권리종류, 제작연도, 배기량, 등록번호 등 권리명세를 신고

□ 현 금

- 기 등록한 현금의 증감변동이 있거나, 종전에는 소유자별 1천만원이 안되 었으나 변동신고 기준일 현재 1천만원이 넘었을 경우에 신고
 - ※ 현금 보관사유(사용용도), 자금출처, 증감 시 변동사유 등 기재
- O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신고
- 자기앞 수표를 제외한 당좌수표 등 일반수표는 채권·채무란에 신고
- 임대차계약 해약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신고

□ **에** 금(보험, 수익증권, 펀드, CD, 투자자예탁금 등 포함)

─<mark> < 예금 시전조회 자료 자동입력 서비스 ></mark> ─

-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금융자산을 사전에 조회 하여 정기변동 재산신고 시 제공해 주는 기능으로 1월 21(화)부터 입력 가능
 - ※ 금융(예금·보험·유가증권·금융기관 채무) 정보는 15일부터 17일까지 자료 정확성 검증실시 ※ 미회신, 회신오류 등이 있을 경우 해당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재회신 요청
- ◈ 의무자의 종전 신고 자료와 금융기관의 회신자료를 비교하여 계좌번호 및 명의인 주민번호 등이 완전히 일치하는 자료는 자동입력해 중
 - ※ 계좌번호, 이름, 주민번호 등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불일치 자료로 인식
- ◆ 다만, 불일치 자료 및 신규 회신자료(미회신 자료포함)는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또는 추가 등록하여야 함

금융기관에서 제공되지 않은 종전의 신고 자료는 각 금융기관에 철저히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하며, 실제 존재하지 않은 계좌가 과다신고 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예탁기관을 "기탁"로 신고하는 경우는 별도의 확인절차가 추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예탁기관으로 신고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 계좌별 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하는 경우 주의
- ※ 보험, 수익증권, 펀드 등을 포함
- ※ 봉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누락 주의
- ※ 보험약관대출은 채무항목에 신고(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 공무원연급관리공단(학자금 등) 및 지방행정공제회의 대출금은 채무항목에 신고
-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의 "평가액" **으로** 신고
-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란에, '-'이면 '채무'항목에 신고
-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괄표"의 예금항목 변동사유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 보 험 이 란 ? 〉

- ◈ 보험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저축성보험만이 신고 대상이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보험이 보장성과 저축성을 겸하고 있어 저축성과 보장성을 명확히 구분 할 수 없음
- 따라서, 순수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등)은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흔치않고 대부분의 보험은 저축성이 가미되어 있어 신고 대상임(피보험자 기준이 아닌 계약자 기준으로 신고)

☆☆☆ 자동차보험이외에는 모두 신고바람 ☆☆☆

□ 주식 등 증권(증권회사의 수익증권 및 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증권 사전조회 제공자료 활용입력 >-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조회 제공된 금융정보(증권) 자료를 활용하여 종전 신고 자료와 금융기관의 회신자료를 비교하여 최종 신고내용을 확정하여 1월 21(화)부터 입력 가능
 - ※ 금융(예금·보험·유가증권·금융기관 채무) 정보는 15일부터 17일까지 자료 정확성 검증실시
 - ※ 미회신, 회신오류 등이 있을 경우 해당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재회신 요청
- ◈ 다만, 신규 회신자료(미회신 자료포함)는 반드시 확인하여 추가 등록하여야 함

금융기관에서 제공되지 않은 종전의 신고 자료는 각 금융기관에 철저히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하며, 실제 존재하지 않은 계좌가 과다신고 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신고기준일 현재의 위탁자 잔고현황, 주식거래명세서 등을 발급받은 후 종전에 신고한 보유주식과 비교하여 증감된 수량, 가액 등을 정확하게 신고
- 수량의 증감 없이 순수하게 주가 등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을 신고하고 "가액변동"을 선택
-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할 경우 반드시 신고기준일 현재의 잔고를 확인하여 신고
- 계좌번호와 발행인의 종목코드(주식의 경우만)를 반드시 기재
-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 등도 보유 시 신고
- 재산공개대상자인 경우『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담당자에게 제출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주식 종류,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교부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는 기재
 - 스톡어워드 등 주식관련 권리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등록하되, 행사가격을 "0" 으로 입력

◈ 주식거래내역서(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제출

- **공개대상자는 신고대상기간 중 모든 주식거래내역을 해당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 주식거래내역서에는 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포함 되어야 함
- ※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 체결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윤리법 제14조4제4항)
- 신고기준일 이전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권의 종류'란에 백지신탁으로 기재하고 '특이사항'란에 신탁일자, 신탁회사를 기재

□ 채 권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종전 신고 금액과 등록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그 사유, 자금흐름 등을 정확하게 신고
- 신규로 발생한 사인간 채권에 대하여 발생 사유, 일자, 채무자와의 관계, 자금출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전세(임차)권은 건물란에 신고

□ 채 무

- < 채무 사전조회 제공자료 활용입력 > --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조회 제공된 금융정보(채무) 자료를 활용하여 종전 신고 자료와 금융기관의 회신자료를 비교하여 최종 신고내용을 확정하여 1월 21(화)부터 입력 가능
 - ※ 금융(예금・보험・유가증권・금융기관 채무) 정보는 15일부터 17일까지 자료 정확성 검증실시
 - ※ 미회신, 회신오류 등이 있을 경우 해당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재회신 요청
- ◈ 다만, 신규 회신자료(미회신 자료포함)는 반드시 확인하여 추가 등록하여야 함

금융기관에서 제공되지 않은 종전의 신고 자료는 각 금융기관에 철저히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하며, 실제 존재하지 않은 계좌가 과다신고 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을 신고
- 신규로 발생한 사인간 채무는 발생사유·일자, 채권자와의 관계, 사용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기신고한 보유 채무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 기재 ※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채무 누락 주의
- * 0 E-1, 1 -- 1, - 1 0 0 0 1 E-1 11 1 1 1 -

○ 부동산(건물·토지)의 임대채무도 신고대상임

- ※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점포 등 소유권은 건물란에 신고 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 중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
-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월세(임대)보증금의 건물임대채무가 인상 또는 인하 시에도 증감변동을 신고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가액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격'란에 매도가격을 기재
 - ※ 매입 및 매도시는 자금출처, 자금사용처 등을 변동사유란에 소명
 - ※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기준일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신고기준일 시장 가격을 확인하여 신고
 - ※ 보석류에 부착되어 있는 금 및 백금은 보석류 항목에 신고

□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신고한 보석류 등을 매도한 경우 신고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실거래가격'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하며,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변동사유란에 소명
-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문가의 평가액으로 신고 ※ 매도 등 실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 가액 유지. 다만 가액을 '0'으로 입력한 경우 반드시 가액을 신고

□ 회 원 권

-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종류를 불문하고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신고한 회원권을 매도한 경우 신고하고 자금의 출처, 사용처 등을 변동사유 란에 소명
 - ※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 시 자치단체에 시가표준액을 문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가액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격'란에 매도가격을 기재
-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

□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 하거나, 이미 신고한 지식재산권이 양도 또는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신고

□ 합명·합자·유한회사에의 출자 지분

- 합명·합자·유한회사에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신고한 회사의 출자가액·지분 및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 신고하고,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변동 사유란에 기재
 - ※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도 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신고
 - ※ 비상장 주식회사에 출자한 경우 주식으로 신고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기 등록한 출연재산, 명칭, 보유직위 등의 변동이 있거나, 새로이 비영리 법인에 출연하였을 경우에 신고하고, 출연일자, 경위, 재산의 출처 등을 변동사유란에 기재(공적 재산이므로 가액 미반영)

□ 변동요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고소득은 본인 및 재산등록 대상 친족의 변동신고기간 동안의 소득을 신고 ⇒ 다만, 연중 최초·재등록 신고를 한 경우는 의무 발생일 부터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을 신고
- 재산의 증가감소 변동에 따라 순재산 증가감소가 있는 경우 자금의 흐름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자금의 출처 또는 사용처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 재산증가 : 자금의 출처소명(급여, 상속, 증여, 이자수익 등)
 - ⇒ 재산감소 : 자금의 사용처 소명(생활비, 병원비,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구입)

예1) 소득이 6천만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6천만원인 경우 증가 사유

- 수입 : 급여 5천만원, 임대소득 1천만원, 편드평가액 1천만원, 상속 3천만원
- 지출 : 자녀교육비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 예2) 소득이 1억원(본인 6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인데 순재산 감소 2천만원인 경우 감소 사유
 - 자녀유학비(미국) 4천만원, 부모요양비 3천만원, 주택담보이자 1천만원, 펀드 손실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 ※ 생활비 사용증명은 연말정산서 등 활용
- 소득대비 순재산의 증감폭이 큰 경우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는지 총괄표 재확인
 - ※ 매매한 부동산의 누락·과다, 사인간채권, 사인간채무, 분양권, 전세권 등의 누락·과다, 소득금액 누락·과다 등 확인

예1) 소득이 5천만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5천만원인 경우

- 주택마련 사인간채무 3천만원 신고 누락
- 예2) 소득이 5천만원인데 순재산 감소가 5천만원인 경우
 - 전세 임차보증금 채권 7천만원 신고 누락

『변동사항 없음』으로 신고하는 경우 특별심사 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재산의 중·감이 있는 경우 가중조치 할 예정임

Ⅲ 고지거부 사전허가 신청 요령

□ 고지거부 신청대상 및 기간

- 신청대상 : 2014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
 - ※ 2011. 1. 1~12. 31기간 고지거부 사전허가자는 재심사 신청 대상
 - ※ 2012. 1. 1~12. 31기간 고지거부 사전허가자는 제외(3년간 유효, '15년도 신청대상)
 - ⇒ 고지거부 내역 확인 : PETI시스템→고지거부신청등→고지거부신청 메뉴에서 확인가능

구 분	신규 신청자	재심사 신청자
신청 대상	○ 최초신청자 ○ '13년 재심사 미신청자 ○ '13년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	○ '11.12.31기준일 정기 재산변동신고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대상자 ○ '11년 최초(재등록)등록의무자가 되어 고지거부를 받은 대상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에 재심사 신청)
신청 기간	○ '14. 1. 1~1. 30까지(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14. 1. 1~2. 28까지(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내)

- 고지거부 대상은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 ⇒ 직계존비속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출가한 딸은 등록제외 대상임)

□ 고지거부 신청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접속하여 [고지거부신청 등] → [고지거부신청]
- 등록의무자는 PETI에서 On-line으로 제출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 날인한 후 증빙자료와 함께 스캔하여 PETI에 올리고 원본은 감사관실에 제출
 - ※ 반드시 고지거부 신청기간내에 고지거부신청서와 증빙서류 원안 제출
 - ※ 마감 이후의 고지거부신청은 접수 불가(시스템 PETI입력 차단)

□ 고지거부 허가요건

-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아야 함
- 고지거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고지거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양여부에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하여야 함.
- 독립생계 소득기준에 미달할 경우 불허를 원칙, 인정소득 산출을 위한 증빙서류는 소득이 명확히 드러나는 서류만을 인정

□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기준

▶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보유시 소득 계산법

총소득 = 일반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일반소득 = 근로소득액 + 금융소득액 + 연금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 등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 및 부동산 자산(주택제외) x 소득 환산 율(기준일 CD 금리)
- ※ 소득이 없는 재산의 경우만 소득환산(중복금지)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당해연도 최저생계비의 150%(가족수 감안)로 함
 - 농촌의 경우 도·농간의 소득비율을 감안, 동 기준의 62% 수준일 경우 고지거부 가능
 - ※ 2012년도 통계청 통계 기준 : 도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연소득 49,521천원) 대비 농가소득(연소득 31,031천원) 비율
 - 특용작물 농업소득은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
 - ※ 2012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http://amis.rda.go.kr/soduk/2012 global data.pdf

< 2014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

(단위: 천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도 시 지 역	905	1,541	1,993	2,446	2,898	3,351	3,803
농 촌 지 역	561	955	1,236	1,516	1,797	2,077	2,358

-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 일반소득 외에 금융 및 부동산 자산(현재 주거하는 주택 제외)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액 산정
 -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소득환산율(시중 CD금리 적용)로 환산한 금액과 일반 소득액을 합산
 - ※ 시중 CD금리 기준일 : 정기변동신고는 전년도 12월 31일, 수시신고는 등록기준일

〈 농지 규모별 농업소득 〉

(통계청 2012년 농가경제 통계자료 반영)

(단위: 천원)

경지규모	0.5ha	0.5-1.0ha	1.0-1.5ha	1.5-2.0ha	2.0-3.0ha	3.0-5.0ha	5.0-7.0ha	7.0ha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단위환산	5천 m²	5천-1만m²	1 만-1만5천 ㎡	1 만5천-2만 ㎡	2만-3만m²	3만-5만m²	5만-7만㎡	7만m²
ha→m'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농업소득	1,469	4,725	10,828	11,605	12,382	18,745	21,418	41,390
월 소득	122	393	902	967	1,031	1,562	1,784	3,449

□ 고지거부 허가 기준

【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

- (직계<u>존속</u>) 나이, 취업 등 직업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직계<u>비속</u>)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여부, 취업·사업 등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1. 부모 및 자녀

- ▶ <mark>부모의 경우,</mark>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 하는 정기적인 윌 소득이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 허가
 - 부모의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 가능
 -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 ▶ <u>자녀의 경우</u>,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등록 기준일 이전(재심사의 경우 신청일 이전) <u>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u>하고 있어야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 혼인한 아들의 인정소득은 주소지를 같이하는 자부(며느리)의 소득 합산 가능
 -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 ※ 혼인한 딸은 재산등록 제외 대상(고지거부 대상이 아님)

2. 조부모 및 손자·녀

- ▶ 부모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조부모 및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유지능력이 있으면 허가 가능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녀의 신생 손자녀는 다음 재심사 때까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 부모 또는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지 않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결정함
 - ※ 혼인한 손녀는 재산등록 제외 대상

3. 타인부양의 경우(직계존속만 해당)

- ▶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u>주소가 같은 경우</u>, 그 타인이 부양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허가
 - 부양하는 타인의 부양능력 유무는 타인의 부양가족수(고지거부자 포함)를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u>주소가 다를 경우</u>,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전이 증명(통장입급 내역 등)되면 허가 가능
 - 타인(들)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소득이 이전되어야 함
- ▶ 타인 부양자의 소득 또는 소득이전액과 피부양자의 소득 합산 가능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연락두절·행방불명된 직계 존·비속, 이(재)혼한 직계 존속인 경우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허가 가능
- ▶ 친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와의 국민소득 비율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허가 가능
- ▶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 허가
 - ※ 단, 관련 증빙서류 및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청

5. 고지거부 신청 및 증빙자료

- ▶ 고지거부 신청시 사전심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며,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생활현황, 소득현황 등)하고 정기 적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
- ※ 인정소득 산출을 위한 증빙서류는 소득이 명확히 드러나는 서류만을 인정하고,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 일반소득 및 재산소득 전체 합산액의 독립생계 소득기준 초과여부에 따라 고지거부허가 결정	일 반 소 득	<농·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 - 농지자경증명(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지원부, 출하증명, 가축사육증명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확인서(재직기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연금수급증명서(금액 기재하여 발급)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통장사본(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 -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유기증권잔고증명, 주식거래증명서 등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산소득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부등본, 건축·토지대장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두절·행방불명, 이(재)혼, 국적상실 및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현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 민원서류 관련 인터넷사이트(http://www.minwon.go.kr)
 - 전자민원(민원24)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등
- ※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제공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 허 가]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공직	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에 따름
	성 명 :		생년월일	:	
신청인 (등록의무자)	소 속 :		직 위	:	
(3 1 1 1 1)	직 급 :		휴대전화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고지거부 사유	서명 5	E는 날인	최종 허가일
				_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고지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공직자윤리법」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항에 따라 고지거부[허가() /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

유 의 사 항

- 1. 고지거부자는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2. 고지거부 사유에 대한 서명 또는 인은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자필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 3. 최종허가일은 재심사신청일 때에만 적으십시오.

작성 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 란 작성방법>

-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온라인 고지거부 신청 매뉴얼

1) 고지거부 허가 현황 확인



- 로그인 후 나타나는 메뉴 중 고지거부신청 등 → 고지거부신청 메뉴 클릭
- 신청목록을 클릭하여 고지거부 친족 등 세부 신청내역 확인
- 신고서 생성전에 심사결과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신고서 친족화면에 '고지거부'로 자동 등록되어 나타남

2) 고지거부 허가 신청 내역



- 이전 신청한 고지거부 허가 또는 재심사 내역 및 심사결과 확인
- '고지거부기간'을 확인하여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심사 신청
- ☞ 예) 고지거부기간의 만료일이 2014-12-30인 대상자는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고지거부허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 신청 대상자임

3)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 신규로 고지거부를 신청하는 경우 고지거부 메뉴 → 신청 버튼을 클릭
- 고지거부 하고자 하는 친족을 추가하여 고지거부 사유 등 신청내역 작성
- 고지거부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친족의 서명을 날인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어야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허가신청 확인은 신청목록을 클릭하여 고지거부 친족 등 세부 신청내역 확인
- 검토의견 및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심사결과를 조회
 - ※ 심사결과가 불허인 경우 해당 친족을 등록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함
 - □ 고지거부 처음 신청하는 경우 '허가', 기존 허기를 연장 하려는 경우 '채심사' 신청

Ⅳ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작성요령

□ 공개개요

-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
 - 정무직 공무원 등 법으로 정한 공개대상자의 2013. 1. 1 ~ 12.31.까지의 재산변동 사항 또는 최초(재등록)신고일 ~ 2013.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4년 2월 말까지 신고하고, 신고 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 <u>판보 또는 공보</u>에 재산의 종류 및 개인별(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변동사항을 공개

○ 공개대상 및 방법

- 관보(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 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정무부지사, 자문대사, 구역청장, 대학총장, 도의원
- 공보(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 ⇒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경남개발공사 사장,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시군의회 의원
- 공개목록 제출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으로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제출 시 공개목록도 함께 제출

□ 공개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공개목록을 그대로 공개하므로 반드시 공개목록 작성요령 및 작성예시를 보고 정확하게 작성

- 공개목록의 소속 및 직위는 2013.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 공개목록은 반드시 본인이 최종확인 후 서명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
- 재산공개목록은 재산등록서류를 작성한 후 자동 생성되는 공개목록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되, 재산등록신고서와 공개목록을 대조·확인하여 재산이 누락·오기되거나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재산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목록에 "변동사항 없음"으로 기재 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재산변동사항 공개 시에는 증감 변동재산의 종류별로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변동사유란에 간단히 소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작성형식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 권리명세란에는"증가","감소"를 표시하고, 개인별 금액 소계 및 총계를 기재함
- 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항목은 가액을 신고(2007.6.29 시행)
 - 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항목 : 지식재산권, 주식매수선택권,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소지 표시
 - 주택(단독, 공동)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소지의 일부 기재생략
 -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빌라 등)의 경우 동·호수가 표시되지 않도록 함(신고서류에는 지번, 동·호수를 기재)



※ 입주예정아파트 및 임대채무의 주소지도 지번 또는 동호수 생략가능

○ 무즛재산 표시

- 문중재산중 등기부에 "○○문중 종회 대표자 ○○○"로 등기된 물건을 제외하고는 단독명의 또는 연명으로 등기된 것은 등록재산에 포함시켜 종전(현재)가액 및 변동액란에 금액을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문중재산"이라고 표시

□ 소속·직위·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 재산의 종류별 기재요령

1. 부 동 산

- ▶ 재산의 종류란에는 토지의 경우 <u>"임야·전·잡종지"</u> 등으로 지목을 기재하고, 건물의 경우는 "아파트·단독주택·상가" 등으로 기재
- ▶ 부동산 거래가 없더라도 가액(공시지가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반드시 <u>"가액변동"</u>이라고 기재
- ▶ 동일지역(동 또는 리가 같은 경우)에 지목이 같은 토지의 경우 **지번별로 분리하여 작성**
- ▶ 공유재산의 경우 권리명세란에 총면적 및 지분면적을 표시하고, 금액은 총 금액증 지분비율 만큼만 표시
- ▶ 변동액란에는 가액기준으로 신고하고 괄호안에는 실매입액 또는 실매도액을 기재함

▶ 대지와 건물

- 건물의 대지는 건물란에 대지 ○○m², 건물 ○○m²로 기재하여야 하며, 대지를 토지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단, 나대지일 경우에만 토지란에 기재)
-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족과 공유하고 있거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만 기재.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하지 않음
- ▶ 미입주 분양아파트의 경우 변동액란에 종전 신고기준일 이후부터 변동신고 기준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총 분양가를 기재.
- ▶ 재건축중인 주택은 분양건물의 동호수를 새로 배정받을 때까지 기존 건물을 계속 신고(조합에 명의이전은 신탁등기로 실질적인 권한은 본인에게 있음)
- ▶ 사망한 직계존속명의 재산은 사망한 순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상속받은 자」또는 「법정상속자」명의로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등기 명의인은 망부 또는 망모임」으로 표기함

2.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 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리고 그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기재
- ▶ 자동차는 권리명세란에 **년식**, **차명**, **배기량**을 기재하고 변동액란 괄호 안에 취득가액,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또는 실매도액을 기재
- ▶ 건설기계, 선박 등은 권리명세란에 등록서류 작성방법에 의한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변동액란 괄호 안에 취득가액,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또는 실매도액을 기재

3. 현금 및 수표

- ▶ 수표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이지만,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동일하게 쓰이는 것이므로 현금(수표 포함)란에 기재하고 권리명세란에는 현금증가(감소)로 기재
 - ※ 당좌수표나 어음은 채권·채무란에 기재함

4. 예금 및 유가증권

- ▶ 예금은 예탁금융기관별로 등록기준일 현재 잔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증감된 금액을 기재
- ▶ 유가증권의 경우 재산의 종류에 상장·비상장주식, 백지신탁, 국채, 공채, 회사채로 기재하고 주식은 권리명세란에 주식의 종류, 수량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증감된 수량을 기재하고 백지신탁의 경우 권리명세란에 신탁기관명과 계약금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증감된 가액을 기재

5. 채권 · 채무

- ▶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및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재산의 종류에 사인간 채권 증가 또는 사인간 채무 감소로 표시하고 권리명세란 괄호 안에 증감된 건수를 기재
- ▶ 임대채무는 임대보증금 증가, 감소로 기재하고 금융기관 채무는 예금의 경우와 동일
- ▶ 채무란의 가액은 총계금액 산정시 감소(△) 처리되어야 함

6. 금·백금·보석류

▶ 가액란에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권리명세란에 종류·함량과 중량 등을 기재, 보속류의 경우 가액산정이 어려우므로 거래가 없는 경우 기존가액을 유지

7.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리명세란에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등을 기재 하되, 거래가 없는 경우 기존가액 유지

8. 회 원 권

▶ 취득가액 및 주소 등 명세기재. 다만, 골프회원권은 거래가 없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기존 가액을 변동하고 변동사유란에 "가액변동"이라고 기재

9.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명세를 기재하고 가액은 기재하지 않음

10. 합명·합자·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 권리명세란에 회사명·등록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출자지분등을 기재 하고 출자금액은 가액란에 기재

11.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권리명세란에 법인명·보유직위·출연재산을 기재하고, 공적재산이므로 **가액은 기재하지 않음**

12.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자 표시

- ▶ 새로이 <u>고지거부 및 등록제외</u>한 직계존비속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목록상** 그 **사실이** 표시되어야 함
 - 본인과의 관계란에 부·모, 장남·차남 등을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표시
 - 종전가액과 감소액에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자의 재산총액을 기재하여 현재 가액을"0"으로 조정

13. 기타사항

- ▶ 재산의 종류별로 증가인 경우 <u>취득경위 및 취득일자</u>, 감소인 경우 <u>사용처</u> 등을 변동사유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신고 서류의 기재내용과 공개목록 기재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 지번, 면적, 예탁기관, 주식종목 등이 신고 서류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 신고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공개목록에 누락된 경우 등
- ▶ 공개목록은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상의 후 확인절차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작성예시

소속		경상남도의회	직 위	도의원		성 명	공 개 자
					_		<단위 : 천원>
본인 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 가액	변동 증가액 (실거래액)	등액 감소액 (실거래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토지	(소계)		400,000	620,000	200,000	820,000	<면적확인>
본인	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00번지 1,000㎡	100,000	20,000	0	120,000	가액변동
본인	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200번지 2,000㎡ (1,000㎡ 증가)	100,000	200,000 (250,000)	0	300,000	대여금 회수로 매입
배우자	잡종지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300번지 1,000㎡(1,000㎡ 증가)	0	200,000	0	200,000	장인으로부터 증여
조부	임야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400번지 0㎡ (1,000㎡ 감소)	200,000	0	200,000 (250,000)	0	부의 대지매입에 사용
부	대지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500번지 990㎡(990㎡ 증가)	0	200,000 (220,000)	0	200,000	조부의 임야 매도금 으로 매입
▶건물	(소계)		250,000	600,000	150,000	800,000	<번지,동호수 삭제> <면적확인>
본인	아파트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현대아파트 80㎡(건물 80㎡ 증가)	0	150,000 (160,000)	0	150,000	대지매도로 구입
본인	아파트 (분양)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무학아파트 90㎡(건물 90㎡ 증가)	0	150,000 (500,000)	0	150,000	신규분양,분양가:500,000 천원,연립주택개도로 구입
배우자	연립주택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반림동빌라 90㎡	100,000	50,000	0	150,000	가액변동
배우자	연립주택 (분양)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사림아트빌 90㎡	100,000	100,000 (300,000)	0	200,000	중도급 부분양 1300,000 전전세년승급 부로 납부
부	전세권 (임차권)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롯데아파트 0㎡(90㎡ 감소)	150,000	0	150,000	0	계약만료야파트중도금사용
차남	근린생활 시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호동상가 100㎡(건물 100㎡ 증가)	0	150,000	0	150,000	외조부로 부터 증여
▶부동 자동	산에 관한 차건설:기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계·선박 및 항공기 (소계)	7,000	25,000	1,000	31,000	
본인	자동차	2007년식에쿠우스배기량(3,500cc) 증가	0	25,000 (25,000)	0	25,000	신규구입(자금출처?)
배우자	자동차	2002년식 뉴소나타 배기량(2,000cc)	7,000	0	1,000	6,000	가액변동
▶현금	(소계)		10,000	0	5,000	5,000	
배우자		현금 감소	10,000	0	5,000	5,000	생활비지출
▶예금	(소계)		135,000	45,000	8,000	172,000	<급왕 만명 및 예금액획안
본인		국민은행 10,000 (5,000 감소) 우리은행 5,000 (3,000 증가)	17,000	3,000	5,000	15,000	
배우자		우리은행 70,000(20,000 증가)	50,000	20,000	0	70,000	급여소득 저축
부		농협 50,000(20,000 증가), 대한생명보험 30,000(2,000감소)	62,000	20,000	2,000	80,000	합여오득 시국
차남		삼성생명보험 7,000(2,000증가), 국민은행 0(1,000감소)	6,000	2,000	1,000	7,000	
▶유가	증권(소계)		95,000	5,000	30,000	70,000	<주식이종류, 수량 확인>
본인	상장주식	삼성전자 5000주,KT 100주	25,000	5,000	0	30,000	
배우자	상장주식	한국기업 5000주(100주 증가), KT 0주(100주 감소)	20,000	0	10,000	10,000	가액변동 채권회수로 구입
배우자	공채	서울도시철도공사, 50좌	50,000	0	20,000	30,000	

본인 게사이		조저	변동	등액			
본인 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 가액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채권(소계)		70,000	20,000	10,000	80,000	<채권채무자 주소성명 삭제>
본인		사인간채권 감소	20,000	0	10,000	10,000	증권매입에 사용
배우자		사인간채권 증가	50,000	20,000	0	70,000	예금인출로 대여
▶채무(소계)		70,000	140,000	30,000	180,000	
본인		사인간채무 감소	20,000	0	10,000	10,000	예금인출로 일부상환
배우자	금융기관 채무	국민은행10,000(20,000감소) 우리은행20,000(10,000증가)	50,000	30,000	20,000	60,000	봉급으로 상환
부	기타	중앙기업10,000(10,000증가)	0	10,000	0	10,000	생활비 사용
부	건물임대 채무	서울 종로구 적산동 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증가	0	100,000	0	100,000	지인에게 대여
▶금 및	백금(소계)	20,000	15,000	0	35,000	
배우자		24K 금 100g(100g 증가)	0	10,000 (10,000)	0	10,000	신규구입(자금출처)
배우자		24K 금 200g	20,000	5,000	0	·	가액변동
▶보석	류(소계)		30,000	5,000	0	35,000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 증가	0	5,000 (5,000)	0	5,000	예금인출로 매입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5캐럿	30,000	0	0	30,000	
▶골동품	품 및 예술		130,000	0	120,000	10,000	
본인	도자기	도자기(고려청자), 작가미상, 160x320cm	120,000	0	120,000 (150,000)	0	매도(자금 사용처)
본인	도자기	서예(서예, 60× 40cm, 계공, 1994)	10,000			10,000	
▶회원급	권(소계)		20,000	20,000	11,000	29,000	
본인	골프	한국컨트리클럽 감소	10,000	0	10,000 (12,000)	0	콘도회원권 구입에 사용
본인	골프	서울C.C	10,000	0	1,000		가액변동
배우자	콘도미니엄	현대콘도미니엄 증가	0	20,000	0	20,000	주식매도로 구입
▶지식계	대산권(소계)	-	-	-	-	
본인	특허권	○○에 관한 특허 증가	-	-	-	-	연 <u>월일</u> 신규등록
▶ 합명·	합자출자지		80,000	20,000	0	100,000	
본인	출자	(유서울기업출자기액00,000천원지분비율40% 연간매출액100,000천원(10,000천원 감소)	80,000	20,000	0	100,000	출자금액 증가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소계)		-	-	-	-		
본인	출연	한국장학재단,보유직위:재단이사장 출연금 100,000천원	-	-	-	-	
▶고지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장남		고지거부	35,000	0	35,000		결혼후분가독립생계유지
장녀		등록제외	20,000	0	20,000	0	'08.5 결혼
		▶총계	1,222,00 0	1,235,000	450,000	2,007,000	증감액:785,000천원 (가액변동78,000천원)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년 00 월 00 일

위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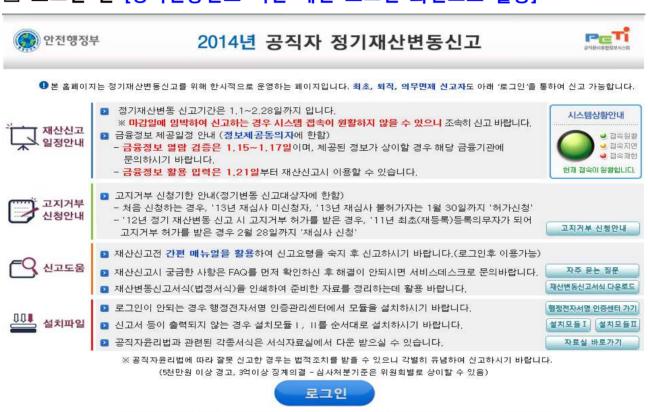
15011-03811일 93.06.23 승인 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70g/m²)

V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사용 매뉴얼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1-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정기변동신고 기간 임시 메인 화면]

- 바탕화면 좌측하단의 윈도우 시작 프로그램 Internet Explorer를 열어 주소 창에 http://www.peti.go.kr을 입력
- 시스템 초기화면에서 하단의 [Login] 클릭
- □ 로그인 전 [정기변동신고 기간 메인 로그인 화면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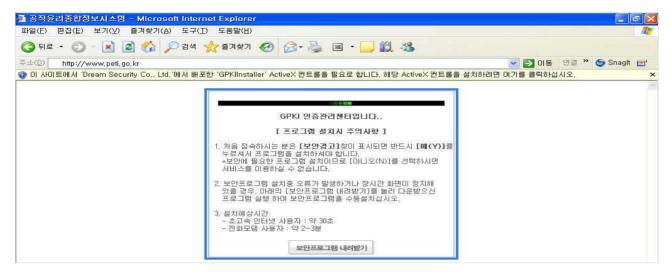
재산신고 문의: 소속기관 윤리업무 담당자, 시스템이용문의: 02-2100-3333(서비스데스크) [개인정보처리방침] 본 홈페이지는 1024 * 768 해상도에 적합하게 구성되었습니다.

○ 정기변동신고시 로그인 하기 전에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재산신고시 주의해야할 사항과 참고해야할 사항에 대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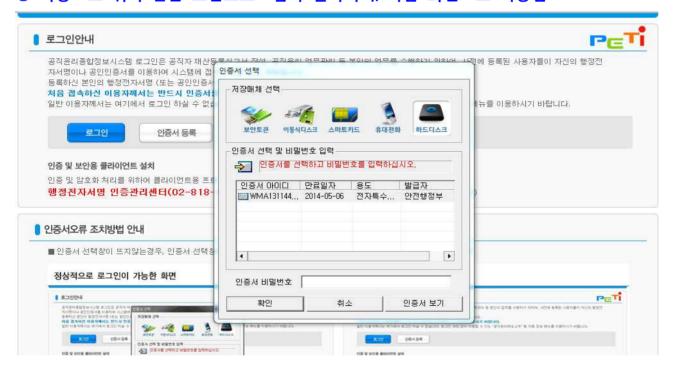


'위 버튼들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열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로그인 을 클릭하면 로그인 하는 화면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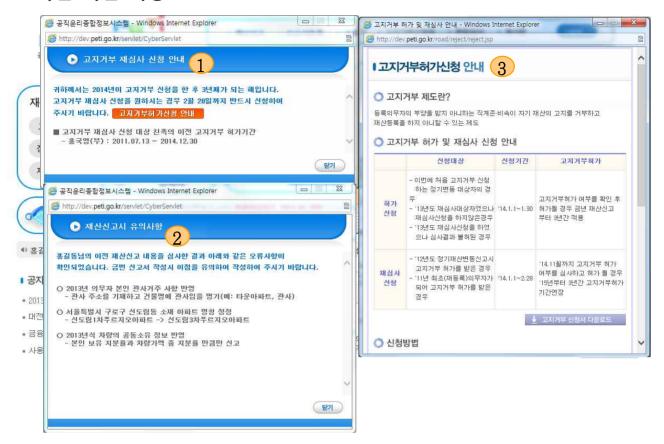


○ 자동으로 위와 같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며, 다음 화면으로 이동됨



- 처음 시스템에 로그인 하는 경우(인증서 등록)
 - 인증서등록 (원물사들록)을 선택해서 등록의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앞으로 계속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등록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시스템 접속
-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하는 경우(두번째 이후 접속)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초기화면에서 Login 선택
 - 로그인(로그)을 선택해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다음 시스템에 접속

□ 사전 확인 사항



○ 1 은 재산등록의무자의 친족 중 고지거부 신청한지 3년이 도래해 재심사 신청해야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 고지거부 신청을 안내하는 메시지 창. "고지거부허가신청 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3 번 창이 나타나며,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가능

☞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 또는 재심사 신청(지침 14페이지 참조)

구 분	신청대상	신청기간
허 가	 이번에 처음 고지거부 신청하는 의무자 '13년도 재심사대상자였으나 재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의무자 '13년도 재심사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불허받은 의무자 	′14.1.1 ~ 1.30
재심사	 '11년 최초 또는 재등록신고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의무자 '12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의무자 	′14.1.1 ~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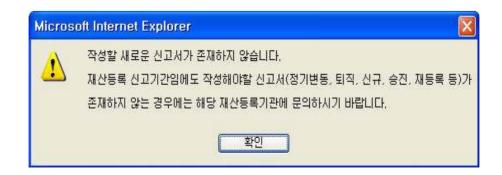
○ 2 은 이전 신고서에 대한 심사 중 윤리업무담당자가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리고자 할 경우, 메모한 내용이 보여 짐

2.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2-1 재산변동신고서 작성화면 이동



- 로그인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상단의 '재산등록신고' 메뉴 또는 화면 중앙의 작성하기 버튼 클릭
- 정기변동신고서가 존재할 경우 '신상명세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함
- 아래와 같이 정기변동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문의하고 신고서 생성 요청



2-2 신상명세서 변동

□ 등록의무자의 신상명세 확인



-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신고기준일('13.12.31)상태로 현행화
- 본인의 신상명세 확인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 후 저장버튼 클릭
- 직급, 자택주소, 직장주소 등 (*)표시의 필수입력사항 입력

구 분	처리방법
도로명주소가 있는 국내 주소지	도로명주소찾기 로 검색 후 선택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국가중요시설	1을 [기타]로 선택 후 주소를 직접 입력
국외에서 거주 시	1을 [국외]로 선택 후 주소를 직접 입력

- 한자이름 입력 시 변환할 글자를 선택 후 키보드의 한자키를 이용하여 입력
- 소속은 상세소속만 변경이 가능하며, 선택을 눌러 상세소속 선택 입력
- 전출입으로 타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 하여 소속변경 요청
- 항목 입력을 마친 후 다음()버튼 클릭 후 친족관리 화면으로 이동



- 버튼을 누르면 등록한 친족의 주소를 등록의무자의 신상명세서상의 등록 주소와 일치시킬 것인지 선택하는 메시지 창 표시
- 친족주소 일괄변경 알림 기능

기 능	내 용
확인	변경전 주소로 등록된 친족의 주소도 일괄 변경 실행
취소	신상명세서의 주소만 변경하고, 등록된 친족의 주소는 친족관리에서 직접 변경

2-3 친족정보 변동

□ 친족관리 입력



- 친족(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소, 직업 등을 신고기준일('13.12.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 이전 신상명세서 작성시 일괄 변경한 친족의 주소가 보여지며, **다른 주소의 친족인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고 선택하여 도로명 주소로 전환
- 친족사항 확인 한 후 변동이 있는 친족을 클릭해서 주소나 직업, 등록대상 상태 수정
 - ※ 이미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고지거부 체크되어 있으며, 고지거부심사결과가 완료된 친족만 고지거부 가능

- 1 에서 아래 내용 확인 후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하여 저장
 - 직계존속(부모)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부(시부)/모(시모)} 란에 반드시 체크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혼/미혼/사별} 란에 반드시 체크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대상 자녀없음} 란에 반드시 체크
- 2 는 **친족사항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친족**으로서 상태에 따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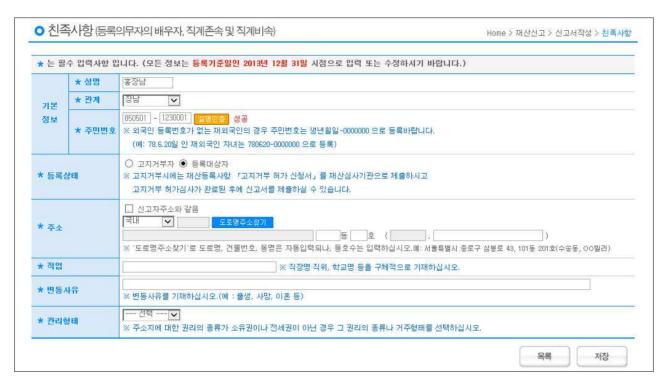
상 템	조 치 방 법
등록대상 친족인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 친족으로 등록
등록대상 친족이 아닌 경우	정보제공동의철회서를 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삭제

□ 등록된 친족정보 변경 시(고지거부, 등록제외 등)



- 친족중 등록대상 또는 고지거부 허가자가 사망 등으로 등록제외자가 된 경우 등록 제외로 체크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유와 발생일자를 입력
- 친족 주소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변동사유"란에 권리의 종류 및 거주형태를 반드시 기재(예 : 관사, 친척집, 사글세 등)
- 등록의무자가 고지거부 문의시 화면 하단에 표기된 소속기관 업무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 친족추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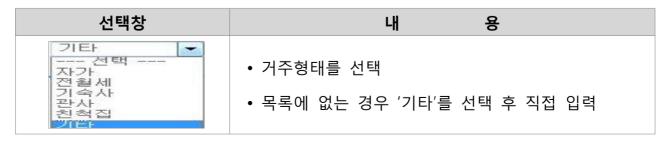


- 친족의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 주민번호 실명인증을 거친 후 정보 저장 가능(필수사항)

인증결과	내 용	이미지
성 공	실명인증 성공	[780211] - [2233444] <mark>실명인증 성공</mark>
오 류	주민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의 경우 포함)	[780211] - [2241777] <mark>실명인증</mark> 성명오류
	잘못된 주민번호를 입력한 경우	[780211] - [2244511] <mark>실명인증</mark> 주민번호 오류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주민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히 입력하였다면 저장하고 다음으로 진행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주민번호에 '생년+0000-성별구분+000000'로 입력후 저장 [예시] 76.12.5일생의 외국인의 경우 '760000-1000000'또는 761205-1000000으로 등록
- 등록상태, 주소, 직업, 변동사유를 입력
- 거주 관리형태를 선택하여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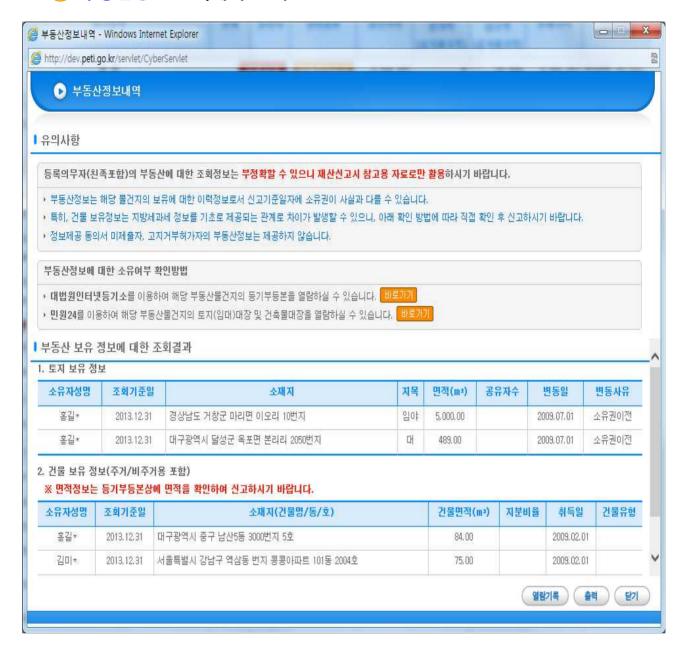
2-4 재산변동 등록

□ 재산총괄표(종전신고내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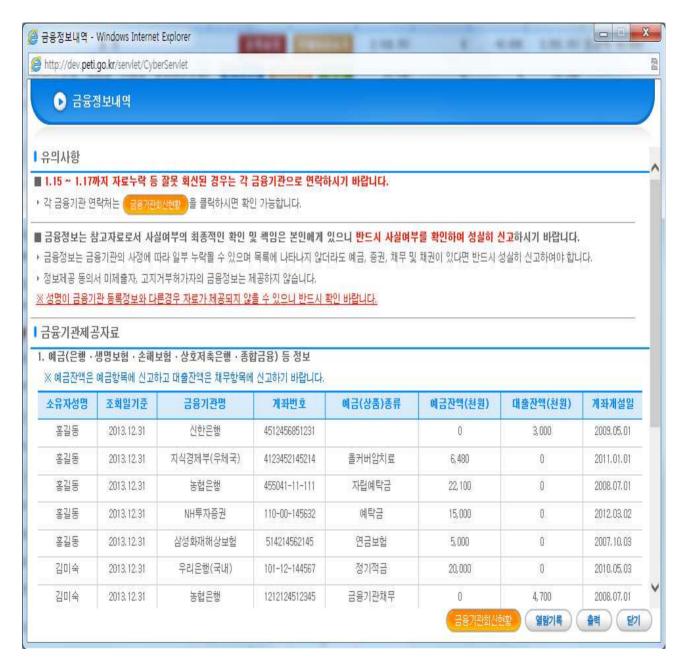
- 재산등록 총괄표 화면으로 종전신고내역 및 금회신고내역을 한눈에 확인 가능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해당 재산항목에서 추가(■출기 버튼 클릭
- 신고된 재산을 변동 또는 삭제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
- 재산을 변동처리 한 경우 **변동된 내역은 굵은 글자로 바뀜**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인 경우
 - [부동산정보열람] [금융정보열람] 을 클릭하여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열람가능
- 미리보기는 해당 재산항목의 재산을, 전체미리보기는 모든 재산을 출력

□ 1 부동산정보 조회내역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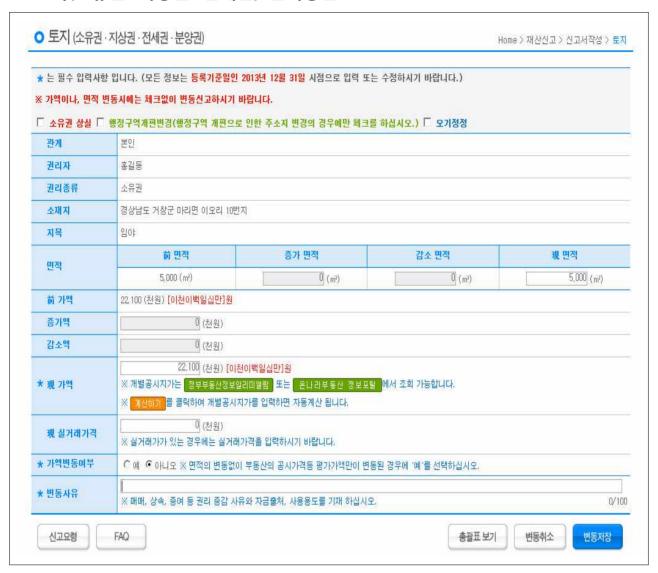
- 퇴직자, 의무면제자, 고지거부자를 제외한 재산등록 친족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 입력시 참고
- 열람기록을 클릭하여 부동산정보내역을 열람한 기록을 확인 가능
-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제출하였으나 부동산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 ※ 건물정보의 경우 "지방세 과세자료" 를 활용하는 관계로 현 보유정보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2 금융정보 조회내역 보기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가 총괄표에서 금융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할 경우 위의 금융정보 내역
- 퇴직자, 의무면제자, 고지거부자를 제외한 재산등록 친족의 금융정보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입력시 참고
- 금융기관회신현황을 클릭하여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리스트를 확인
- 열람기록을 클릭하여 금융정보내역을 열람한 기록을 확인 가능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제출하였으나 금융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 토지(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입력방법



- 이전 신고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낮을 경우 현 가액을 유지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 공동소유 부동산은 면적과 현가액란에 소유지분을 신고(예 : 전체 00m²중 00m²)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출개)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現가액은 現가액 입력란을 클릭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증가/감소액을 자동으로 계산
- 매도,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 보기 버튼 클릭
- 면적의 증감 없이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 건물(소유권, 전세권, 분양권) 입력방법



- 이전 신고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낮을 경우 현 기액을 유지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 공동소유 부동산은 면적과 현가액란에 소유지분을 신고(예 : 전체 00m²중 00m²)
-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분리하여 신고(아파트는 건물면적만 기재)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주소, 건물의 구조 및 용도, 건물면적, 대지면적, 가액,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권리명세변경에 체크시 건물소재지의 지번 및 지목, 면적 등을 변경
- 면적은 m²(1평은 3.3m²), 금액은 천원단위로 입력
- 가액산정 방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동산알리미 홈페이지(공동주택 공시가격조회)
단독주택 등 공시가격이 있는 건물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산세관련 부서에 가액조회
그 외 건물	·토지의 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 + 건물의 과표

※ 소유권을 취득하여 추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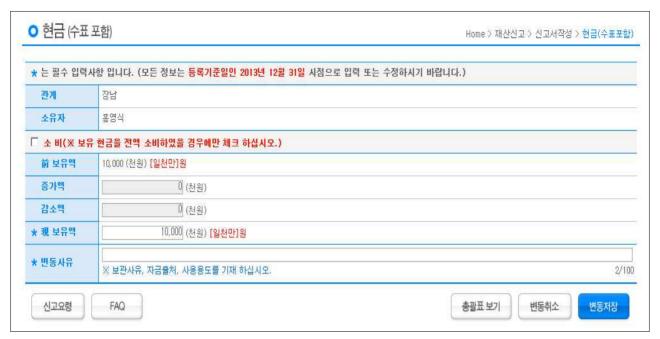
- 매도, 증여,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
- 변동신고한 재산을 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 보기 버튼 클릭
- 면적의 증감 없이 순수하게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대상임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

○ 부동산에 관한 규정	성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Home > 재산신고 > 신고서작성 > 자동차 등	
★ 는 필수 입력사항 입Ⅰ	니다. (모든 정보는 <mark>등록기준일인 2013년 12월 31일</mark>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명세변경(차량등	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체크를 하십시오.)	
관계	본인	
권리자	홍길동	
권리종류	자동차	
권리명세	2011년식 싼타페 배기량(2,000CC) 02바 1234	
신규(이전)등록일		
	□ 공동자분 (공동자분일 경우 체크하십시오.)	
소유여부	© 대표소유자 © 공동소유자	
至市場下	공동소유자 수 :	
	소유자 지분율: 100 (%)	
□ 소유권 상실(매도, 종	등며, 상속, 멸실, 폐차 등)의 경우 체크를 하십시오.	
前 가역	12,000 (천원) [일천이백만]원	
증가액	0 (천원)	
감소액	0 (천원)	
* 現 가액	12,000 (천원) [일천이백만]원 ※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을 기재하며,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세표준)을 기재하고, 기준가액 등 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의 실매입액을 '실거래가격'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現 실거래가격	0 (천원)	
★ 가액변동여부	C 예 © 아니오	
★ 변동사유	가액변동 없음 ※ 매매, 상속, 증여 등 권리 증감 사유와 자금출처, 사용용도를 기재 하십시오. 7/100	
신고요령 FA	NQ 총괄표 보기 변동취소 변동저장	

- 광업권, 어업권은 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을 신고
- 자동차의 경우 매매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 보유시 자동차 보험의 차량 기준가액, 시가표준액 등의 순으로 가액을 변동 신고
- 리스 자동차는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리스로 인한 채권, 채무는 신고대상임
- ※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 대금은 채무란에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추가(출개)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년식), 차명(자동차명), 배기량(CC), 차량등록번호, 신규(이전) 등록일, 소유여부, 취득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매도,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지분에 체크하고 지분율(소숫점 이하 절사) 입력
- 순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대상임(자동차보험의 차량기 준가액 등 확인)

□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현금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보유액, 변동사유 입력 후 저장버튼 클릭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변동된 보유액을 증가액, 감소액란에 입력 후 저장
- 보유액을 모두 소비했을 경우 소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 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 보기 버튼 클릭

□ 예금 입력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 봉급에서 자동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누락 주의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사전 조회된 금융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변경 및 신규 추가 등 가능(총괄표에서 금융정보활용입력(<mark>☎정보활용입력</mark>)버튼을 클릭)
-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만기일자, 보유액, 특이사항을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변동된 현 보유액을 입력, 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
-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재산등록총괄표의 예금항목 변동사유기재(법률사유기재)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 예금을 해약했을 경우 **해약에 체크 후 특이사항 입력**(0원과 해약은 다름)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 제공된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종전 신고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신고
- 『일치자료』란, 이전 신고한 금융정보와 금번 금융기관에서 조회된 자료중 관계, 소유자,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일치한 내역을 의미
- 『불일치자료』는 조회된 자료중 '일치자료' 이외의 내역으로써, '일치', '변경', '신규추가' 등의 작업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임
 - ▶ 일 치 : '이전 신고 자료'와 '금융기관 제공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동일 계좌라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항목을 선택(☑)후, 일치(████) 버튼 클릭
 - ▶ 변 경: '이전 신고 자료'를 변경하려면 해당 이전 신고 자료를 선택(☑)후, 변경
 (□□3□)버튼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기재
 - ▶ 신규추가 : '금융기관 제공자료'를 통해 소유 사실이 확인된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제공자료'를 선택(☑)한 후 '신규추가'(실규秦가)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신고
 - ▶ 기타추가 : 그 외 해외계좌 등 추가적인 자료는 기타추가(기타추가)를 클릭하여 등록

□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입력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신규 취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신고하고,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 비상장(상장前, 상장폐지) 주식은 주권의 액면가로 신고해야 함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별도 제출
 - ✔ 주식거래내역서(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제출
 - **공개대상자는 신고대상 기간중 모든 주식거래내역을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공직 자윤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 ☞ 해당 등록기관은 취합하여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실로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에는 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 체결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4항)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사전조회된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재산 변경 및 신규 추가를 처리하는 경우, 총괄표에서 금융정보활용입력(률을정보활용입력)버튼 클릭
- 소유자, 권리종류, 예탁기관, 계좌번호, 발행인, 종목코드, 수량, 가액, 특이사항을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변동된 주식수량 및 現 보유액을 입력하면 증가/감소량은 자동입력
- 現 보유액란 옆에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주식시세를 계산하는 창이 나타나고 주당 주식시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계산
-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했을 경우 전량매도에 체크 후 특이사항 입력
-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재산등록총괄표의 증권항목 변 동사유기재(법동사유기재)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 기재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 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 보기 버튼 클릭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임
- 수량의 증감 없이 주가 등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에도 가액 증감분 신고

□ 채권 입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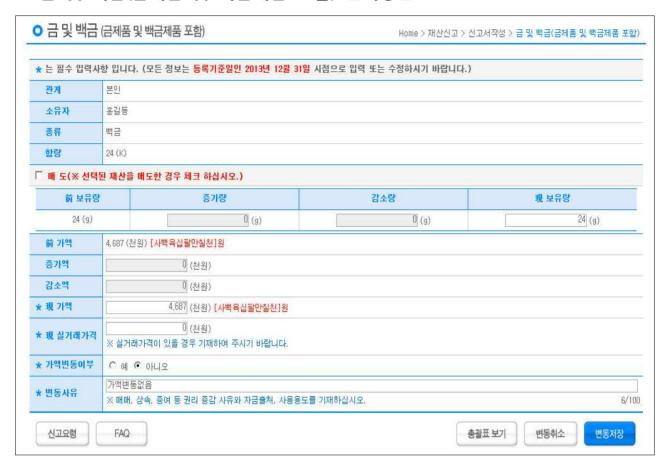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타인의 주택 점포 등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임차)권은 채권항목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항목에 등록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채권자, 채권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채무자, 채무자주소, 전화번호, 변동사유를 입력
- 채무자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u>도로명주소화기</u>)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채권을 전액환수 했을 경우 전액환수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채무 입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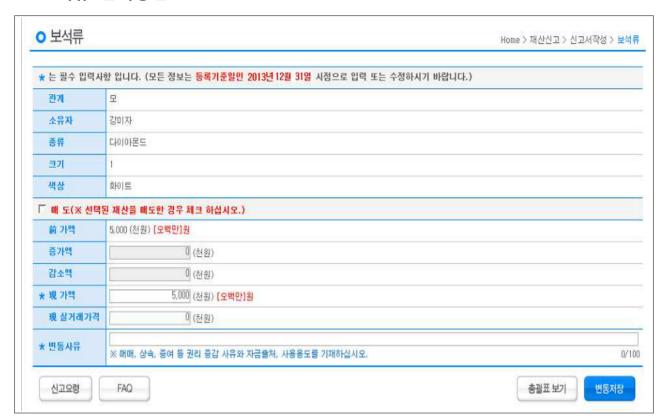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 주택이파트·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채무자, 채무종류, 채무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채무를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전액상환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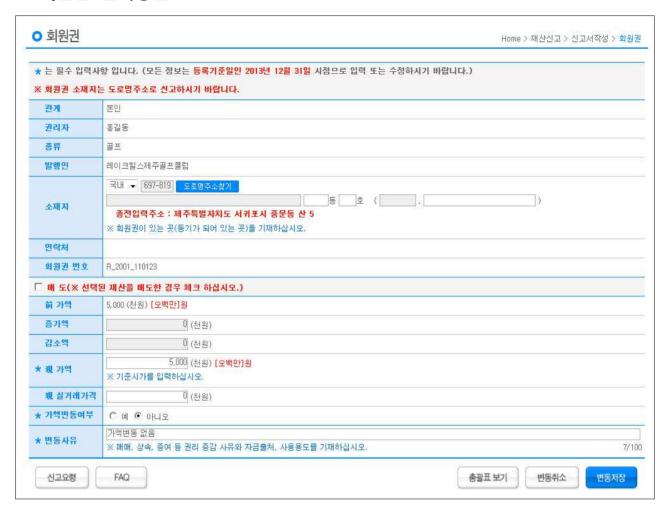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재산등록 단계 → 개별 금 및 백금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 □ □ 비트 클릭
- 소유자, 종류(금·백금),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수량의 증감 없이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 ※ 신규 등록하는 경우 평가가액은 감정가 등 시장거래 금액으로 산정

□ 보석류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보석류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다이아몬드 등),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신규 등록하는 경우 평가가액은 감정가 등 시장거래 금액으로 산정

□ 회원권 입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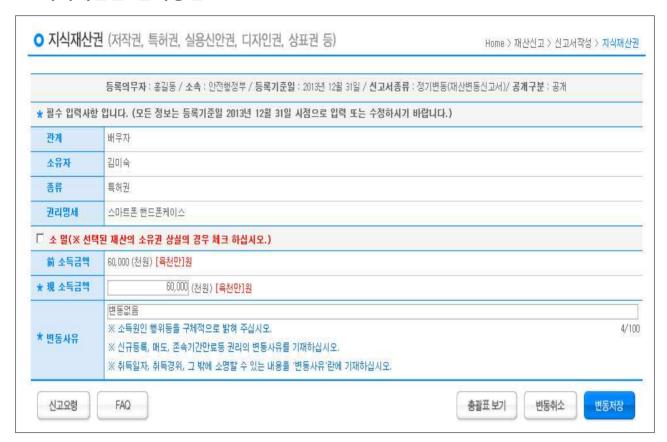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회원권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비튼 클릭
- 소유자, 발행인, 종류, 회원권번호, 가액, 실거래액, 변동사유 등을 입력
- 소재지가 변경됐을 경우, (도로명주소찾기)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회원권을 매도했을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가액변동여부는 회원권의 종류가 골프인 경우에만 나타남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골프회원권은 순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대상임

□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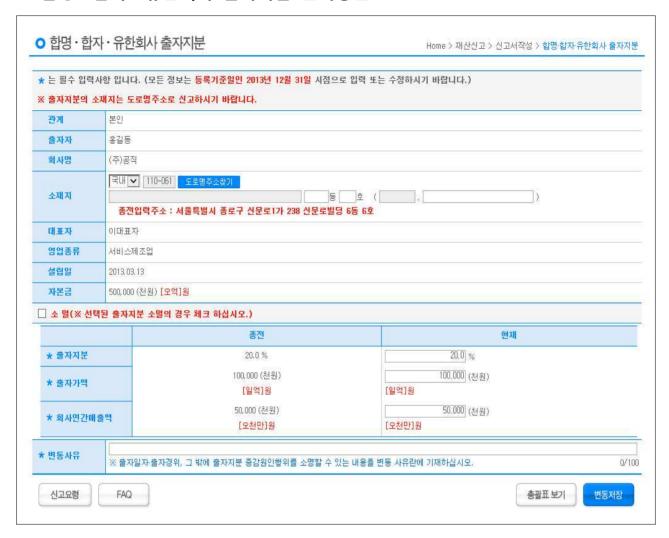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골동품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소유자, 종류(도자기·회화), 품명, 크기, 작가, 제작연대,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 ※ 신규 등록하는 경우 평가가액은 감정가 등 시장거래 금액으로 산정

□ 지식재산권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무체재산권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 권리명세, 소득금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지식재산권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출자지분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비튼 클릭
- 출자자, 회사명, 대표자, 영업종류, 자본금, 출자지분, 출자가액, 연매출액, 변동사유를 입력
- 소재지가 변경됐을 경우,(도로명주소찾기)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출자한 지분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07.06.29이후 신고부터는 현재 출자가액과 출자지분을 신고토록 변경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출개)버튼 클릭
- 출연자,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목적사업, 변동사유를 입력
- 소재지가 변경됐을 경우,(<u>도로명주소찾</u>))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출연재산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재산신고내용 확인사항 처리방법



- 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시스템적으로 비교하여 누락 및 실수할 수 있는 내용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임
- ※ 이 메뉴에서 나오는 내역은 무조건 신고대상은 아니며, 등록의무자가 확인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
- 1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 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표시됨,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 관사·기숙사·친척집 거주, 월세 등일 경우 해당 사실을 친족 관리의 거주형태란에 입력
-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 2 소유건물 임대권 미신고 확인
- 신고된 소유건물에 거주하는 의무자 또는 친족이 없으며, '채무' 란에 '건물임대채무'도 신고 되지 아니한 경우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 해당 건물이 공실이거나 무상임대중인 경우, 총괄표상 해당건물의 '변동 사유란'에 사실을 상세히 기재
-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 3 소유토지 미신고 확인
- 임대채무로 신고한 토지가 **토지 항목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됨.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
- ※ 매도한 경우에는 총괄표 채무항목에서 전액상환을 체크하여 환수처리
- 4 소유건물 미신고 확인
- 임대채무로 신고한 건물이 **건물 항목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됨.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
- ※ 매도한 경우에는 총괄표 채무항목에서 전액상환을 체크하여 환수처리
- 5 금융정보 미신고 확인
 - '금융정보 활용입력' 기능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표시됨**. 누락한 경우에는 **금융정보활동입력 기능을 통해 추가**
- 6 고지거부 재심사자 미신청 확인
- 기 고지거부 허가받은 의무자 중 재심사 대상자로서 신청 하지 않은 친족이 있는 경우에 표시됨.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가능(p16 참조)

2-5. 재산변동 요약서 작성



- 재산등록신고 → 변동요약서 선택
- 신고자가 재산등록총괄표에 입력한 재산내역의 금액변동을 확인
- ※ 재산등록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재산변동요약서(실거래액이 있는 경우 실거래액으로 계산)의 순증감액은 서로 다를 수도 있음
- 재산증가, 재산감소의 변동사유 란에 변동사유내용 수정
- 순재산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 증감에 대해 대표사유를 순재산증가 또는 감소 사유에 입력
- 본인소득과 친족의 소득을 기재
- 재산변동요약서 작성완료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 요약서 저장
- 재산변동요약서 작성 중 내용이 틀린 경우는 변동요약서가져오기(ਜ਼ਫ਼ਫ਼ਖ਼ਖ਼ਸ਼ਲ਼ਫ਼ਸ਼)버튼을 클릭하여 변동요약서를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 재산변동요약서 작성 후 출력버튼을 클릭해 변동요약서 출력
- 모든 작업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2-6.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 변동요약서 작성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 공개목록 작성 중 내용이 틀린 경우는 [공개목록 다시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동요약서를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 아파트 동·호수, 사인간 채무·채권, 건물임대채무 등에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가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
- 공개대상자인 경우 "공개목록 작성방법 안내"에 따라 공개목록을 작성
- 공개목록은 자동으로 작성되며 재산항목 중 채무만 전체 합계에서 '-'처리됨
- 공개목록의 변동사유에 적절한 사유를 입력 한 후 저장(◘저잘)버튼 클릭
- 출력(^{□ 출력}) 버튼 클릭 후 출력한 공개목록은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최종적으로 공개목록사항이 맞는지 확인 한 후 다음(명) 버튼 클릭

2-7. 신고서 제출 및 완료



- 변동요약서 작성완료 후(공개자는 공개목록 작성후) 다음(다음) 버튼 클릭
- 재산등록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 고지거부허가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친족을 고지거부신고한 경우 심사완료 전까지는 신고서 제출이 안됨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면 신고서 접수가 되었음을 확인
- 신고서 제출완료 후 신고서제출 메뉴로 들어가면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신고서 제출 후 필요시 접수증 출력(^{□ 접수증출력}) 버튼 클릭해 접수증 출력

3.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3-1 제출신고서 조회



- 필요한 경우 "신고서조회"→ "제출신고서조회"메뉴를 클릭하여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음
- 과거에 신고한 모든 신고서를 년도별로 조회할 수 있음
- 신고서 세부 재산항목을 보고자 할 경우 해당 신고서를 클릭하면 재산총괄표 화면이 나타나 세부조회 가능

3-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재산신고" → "신고서수정" 클릭
 - 신고서 수정요청 화면에서 요청사유를 입력하고 수정요청
 - ※ 재산등록 신고기간중(1.1~2.28)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언제든 수정이 가능 하지만, 신고기간 만료이후(3.1)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정승인을 받아야만 수정이 가능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에 의하여 3월 10일까지만 가능)